

#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 경 의원 발의)

|          |      |
|----------|------|
| 의안<br>번호 | 1510 |
|----------|------|

발의년월일 : 2020년 05월 25일

발 의 자 : 김 경 의원(1명)

찬 성 자 : 임종국, 경만선, 김화숙,  
최웅식, 김정태, 이영실,  
이광성, 홍성룡, 정진철,  
장상기 의원(10명)

## 1. 제안 이유

-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에 따라 통폐합되는 통합학교 및 폐지학교,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여건 보장 등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 골자

-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적정규모학교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과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운영,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안 제5조 ~ 제8조).

###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없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촉진하여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 교육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정규모학교”란 교육결손 최소화 및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한 규모의 학교로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을 충족한 학교를 말한다.
2.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란 소규모 학교 등 적정규모학교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에 대하여 통폐합(분교장 개편 및 폐지를 포함한다), 이천재배치, 통합운영학교 운영 등을 통해 적정규모학교로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3. “통폐합”이란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하여 2개 이상의 학교(분교장을 포함한다)를 통합하면서 1개 이상의 학교가 폐지되는 것을 말한다.
4. “통합학교”란 통폐합에 따라 폐지학교의 학생을 받아들인 학교를 말한다.
5. “폐지학교”란 통폐합에 따라 학교가 폐지되었거나 폐지가 예정되어 있는 학교를 말한다.

6. “이전재배치”란 학교신설수요가 있는 개발지역내에 기존 소규모 학교를 이전 재배치하거나 학생 수에 비해 과다 배치된 지역의 학교를 학생수가 많은 지역으로 균형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7. “통합운영학교”란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또는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교육감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4. 계획 실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및 운용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학교의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

## 사업

### 2. 폐지학교 학생 지원사업

###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기준 및 범위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학교 및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적정규모학교 운영)** ①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의 육성과 효율적인 학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학교를 통폐합, 이전재배치 하거나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적정규모학교를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규모, 학생의 통학거리 및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주민의 의사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위원회의 설치)** ①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 1.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 2.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서울특별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